#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7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김주영·신정훈·권칠승

이장섭 · 이병훈 · 김정호

김홍걸 • 윤영덕 • 강훈식

김승원 · 문진석 · 송영길

강선우 • 박영순 • 홍익표

김승남 · 김경협 의원

(17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에의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은 직업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근무시간 제한 등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피로관리의 대상을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

법률 제 호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 제목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제65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사(항공기사용사업자는 피로관리 주체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를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를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승무원"을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승무시간등"을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7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 <u>승무원 피로관리</u> ) ① 항공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	
원 및 객실승무원(이하"승무	객실승무원(이하 "승무
<u>원"이라 한다)</u> 의 피로를 관리	원"이라 한다)과 제65조제1항에
하여야 한다.	따른 운항관리사(항공기사용사
	업자는 피로관리 주체에서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	1
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	
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	
<u>시간등"이라 한다)</u> 의 제한기	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
준을 따르는 방법	관리사의 근무시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	3
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u>따라</u>	
<u>승무원</u> 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
우에는 승무원의 <u>승무시간등</u> 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한다.

- 1. ~ 16. (생 략)
-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속 <u>승무원</u>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 49. (생 략)

② (생략)

-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u>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u>
제	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명 취소 등) ①
	1. ~ 16. (현행과 같음)
	17
	<u>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u>
	18.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166조(과태료) ①
	1

상의 방법으로 소속 <u>승무원</u>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 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sim$	15.	(생	략)

② ~ ⑥ (생 략)

	<u>승무원 또</u>
는 운항관리사	
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